

의안번호	2203903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 10. 21.
추 계 번호	24C373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8천만원(연평균 3,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활동지원 실태조사(안 제3조의2)	90	-	-	90	-	180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반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수준과 급여비용 산정 시 반영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2023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아래 [표 2]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3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위해서 약 9천만 원을 투입¹⁾하였으므로, 동 단가를 준용
 -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1)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2023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조사를 수행하는 데 7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통계청 수행), 연구용역비로 8,9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본 추계서에서는 연구용역비만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연구용역비 단가를 준용

[표 2] 장기요양 실태조사와 활동지원 실태조사의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실태조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활동지원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내용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 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3)을 바
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억 8천만원(연평균 3,600
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안 제3조의2)	90	-	-	90	-	180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
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